

「문화예술경영학연구」 논문심사규정

2008년 10월 1일 제정

2014년 6월 1일 개정

2019년 9월 1일 개정

2021년 6월 1일 개정

제1조(목적)

1. 이 규정은 한국문화예술경영학회(이하 학회)가 발행하는 학회지 「문화예술경영학연구」의 논문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대상 논문)

1. 논문심사는 한국문화예술경영학회 회원인 논문집필자가 편집위원회에 제출한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2. 다른 학술지나 단행본에 발표되었거나 투고된 논문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제3조(심사위원 위촉)

1.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에 대해 논문주제를 고려하여 3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2. 편집위원이 논문을 투고한 경우 해당 호의 심사위원 선정과정에는 참여할 수 있으나 해당 논문의 심사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4조(논문심사 의뢰)

1. 편집위원회는 위촉된 심사위원에게 해당 논문과 논문심사서를 보내 심사를 의뢰한다.
2. 편집위원회는 심사 의뢰 시 투고자의 신원을 알 수 없도록 조치한다.
3. 논문 심사의뢰를 받은 심사위원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한 뒤 논문심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논문심사기준)

1. 논문 심사는 1) 연구주제의 적절성, 2) 연구방법 및 논의구성의 타당성, 3) 연구의 체계성, 4) 논문의 독창성, 5) 연구결과의 의의, 그리고 6) 논문작성 규정의 준수정도를 기준으로 한다.

제6조(논문심사의 판정)

1. 논문심사의 판정은 게재가,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사, 게재불가의 네 가지로 한다.

제7조(논문게재의 판정)

1. 편집위원회는 각 심사위원의 심사평가 결과를 수합한 뒤 심사위원의 심사를 토대로 아래의 표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라 투고논문의 게재여부를 판정한다.

판정등급	기준 및 의미
게재	- (기준) 2인 이상 '게재 가' - (의미) 수정 없이 게재
수정 후 게재	- (기준) 위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2인 이상이 '수정 후 게재'이상으로 평가한 경우 - (의미) 심사위원 의견에 대해 투고자가 수정/보완 후 편집위원회에서 확인하여 추가수정 또는 게재여부를 결정
수정 후 재심사	- (기준) 위의 두 유형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2인 이상이 '수정 후 재심사'이상으로 평가한 경우, 이를 충족하면서 게재 불가가 1인 있는 경우에도 해당 - (의미) 심사위원 의견에 대해 투고자가 수정/보완 후 수정을 요청한 심사위원의 재심사를 거쳐 편집위원회에서 확인하여 추가수정 또는 게재여부 결정.
게재 불가	- (기준) 2인 이상 '게재 불가'로 평가한 경우 - (의미) 게재불가

제8조(수정 및 심사 기간)

1. 논문심사서는 3주 이내에 편집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심사위원이 교체될 수 있다.
2. 논문투고자는 수정요청 통보를 받은 후 2주 이내에 논문을 수정하여 수정요지서와 함께 편집위원회에 다시 제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투고철회로 간주될 수 있다.
3. 심사자는 재심사 요청을 받은 후 2주 이내에 논문을 재심사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게재불가 판정에 대한 이의제기)

1. '게재불가' 평가를 받은 자는 결과를 통보 받은 후 3일 이내에 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편집위원장은 이의제기 사항을 검토하여 본래의 심사자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또는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과반수 찬성에 의해 새로운 2명의 심사자를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의 개정안은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의 개정안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의 개정안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